



뉴스요약

- 1.<특허심사지침서>수정에 관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결정
- 2.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 경쟁법(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모집
- 3.전국 최초의 국가지적재산권 평가 인증 센터 성립

<특허심사지침서>수정에 관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결정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심사지침서>에 대하여 하기 수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1. 제 2 부분 제 1 장 제 4.2 절에 관한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1 장 제 4.2 절 제(2)항에 이어서 하기 내용을 신설한다.

[예]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청구항에 있어서, 비즈니스 룰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뿐만아니라 또한 기술특정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 25 조에 근거하여 권리수여의 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제 2 부분 제 9 장 제 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9 장 제 2 절 제(1)항 제 1 단락중의 “단지 캐리어(예컨대, 자기 테이프, 디스크, CD, 광자기 디스크, ROM, PROM, VCD, DVD 혹은 기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단지 캐리어(예컨대, 자기 테이프, 디스크, CD, 광자기 디스크, ROM, PROM, VCD, DVD 혹은 기타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자체”로 수정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9 장 제 2 절 제(1)항 제 3 단락 첫구절중의 “단지 기록된 프로그램에 의해 한정된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를 “단지 기록된 프로그램 자체에 의해 한정된 컴퓨터 판독 가능 저장 매체”로 수정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제 2 부분 제 9 장 제 3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9 장 제 3 절 제(3)항중의 예 9 를 삭제한다.

4. 제 2 부분 제 9 장 제 5.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9 장 제 5.2 절 제 1 단락 첫구절중의 “즉 해당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를 “예컨대, 해당 방법을 실현하는 장치”로 수정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9 장 제 5.2 절 제 1 단락 세번째 구절중의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 기능은 어떠한 구성부분에 의해 완성되며 어떠한 기능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을 “상기 구성부분은 하드웨어를 포함할 뿐만아니라, 또한 프로그램을 포함할수 있다”로 수정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9 장 제 5.2 절 제 2 단락중의 모든 “기능 모듈”을 전부 “프로그램 모듈”로 수정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5. 제 2 부분 제 10 장 제 3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2 부분 제 10 장 제 3 절에 제 3.5 절을 신설하고, 제 3.4 절 제(2)항을 제 3.5 절로 옮겨 수정하되, 제 3.5 절 내용을 하기와 같이 기재한다.

3.5 추가제출된 실험데이터에 관하여

명세서에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시에는 원 명세서와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관은 출원일 이후에 추가제출된 실험데이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제출된 실험데이터에 의해 증명되는 기술효과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특허출원서에 공개된 내용으로부터 얻어낼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6. 제 4 부분 제 3 장 제 4.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4 부분 제 3 장 제 4.2 절 제(2)항 (i)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i) 특허권자에 의해 삭제 방식으로 보정된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지정기한내에 보정내용에 대하여 무효심판이유를 추가하고, 해당 기한내에 추가된 무효심판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7. 제 4 부분 제 3 장 제 4.3.1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4 부분 제 3 장 제 4.3.1 절 제(2)항 (i)중의 “병합 방식에 의해 보정된 청구항 혹은”을 삭제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8. 제 4 부분 제 3 장 제 4.6.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4 부분 제 3 장 제 4.6.2 절 제 1 단락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상기 보정원칙을 만족시키는 전제하에서, 청구의 범위를 수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삭제, 기술안의 삭제, 청구항에 대해 더 한층 한정, 뚜렷한 착오에 대한 수정에 한하여 진행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 4 부분 제 3 장 제 4.6.2 절 제 3 단락을 삭제하고 제 4 단락을 제 3 단락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제 4 단락으로서 하기 한 단락을 신설한다.

청구항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한다는것은 청구항에 기타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혹은 다수의 기술특징을 보충함으로써 보호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9. 제 4 부분 제 3 장 제 4.6.3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4 부분 제 3 장 제 4.6.3 절 제 2 단락중의 “병합 방식으로 청구의 범위를 보정”을 “삭제 방식을 제외한 기타 방식에 의해 청구의 범위를 보정”으로 수정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10. 제 5 부분 제 4 장 제 5.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5 부분 제 4 장 제 5.2 절 제(2)항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2) 이미 공개되었으나 특허권의 수여에 대하여 아직 공고하지 않은 발명특허 출원서류에 대하여 해당 특허 출원서류중의 관련내용들을 열람 및 복사할수가 있는데, 이에는 출원서류, 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속 서류, 공보서류, 초보심사절차중 출원인에 대하여 발행한 통지서 및 결정서, 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 의견서 본문 및 실제심사절차중 출원인에 대하여 발행한 통지서, 검색보고서 및 결정서들이 포함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 5 부분 제 4 장 제 5.2 절 제(3)항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3) 이미 특허권의 수여를 공고한 특허 출원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가능한 내용에는 출원서류, 우선권서류, 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속서류, 발명특허출원 단행본,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특허 및 디자인 특허 단행본, 특허 등기부, 특허권 평가 보고서 및 기심사판결된 각 심사절차(초보심사, 실제심사, 재심 및 무효 심판등을 포함)중 특허청 및 특허심판위원회로부터 출원인 혹은 관련 당사자에게 발행된 통지서, 검색 보고서 및 결정서, 통지서에 대한 출원인 혹은 관련 당사자의 답변의견이 포함된다.

<특허심사지침서> 제 5 부분 제 4 장 제 5.2 절 제(5)항을 삭제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11. 제 5 부분 제 7 장 제 7.4.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5 부분 제 7 장 제 7.4.2 절을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

7.4.2 재산 보전을 협조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중지되는 기한

인민법원에서 특허청이 재산 보안을 협조 수행할것을 요구함으로 인해 중지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사재정서 및 협조 수행 통지서에 기재된 재산 보완 기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

인민법원에서 계속하여 재산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지 기간 만료전에 계속하여 보전할데 관한 협조수행통지서를 특허청으로 송달하고, 확인 결과 본 장의 제 7.3.2.1 절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중지 기한이 리뉴얼된다.

12. 제 5 부분 제 7 장 제 7.4.3.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5 부분 제 7 장 제 7.4.3.절중의 “혹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재산 보전 중지를 협조 수행한다”을 삭제한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13. 제 5 부분 제 7 장 제 7.5.2 절의 수정

<특허심사지침서> 제 5 부분 제 7 장 제 7.5.2 절중의 “중지 기한은 6 개월” 을 “중지 기한은 민사 재정서 및 협조 수행 통지서에 기재된 재산보전기한에 따른다”.

본 절의 기타 부분은 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본 결정은 2017 년 4 월 1 일부터 실행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 경쟁법(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공개적으로 의견 모집

2017 년 2 월 22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국무원은 반부정 경쟁법에 대한 개정 초안을 심의할데 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은 1993 년 해당 법률을 실시한 이후로 24 년간에 거친 첫번째 개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고 <반부정 경쟁법>은 1993 년 12 월 1 일부터 실행되었으며, 총 5 장 33 조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초안은 총 35 조로 구성되어 있다.<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 경쟁법 (개정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에 공개됨으로써 사회 대중들로부터 의견을 모으도록 하였다(마감일: 2017 년 3 월 25 일)

제1장 총칙

제 1 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격려 및 보호하며, 부정 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영자는 시장 거래중 자원, 평등, 공정,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인된 상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부정 경쟁 행위란, 경영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 수단에 의해 시장 거래에 종사하여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이익을 손해하고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칭하는 경영자란, 상품 경영 혹은 영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하기에서 칭하는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 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부정 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무원은 반부정 경쟁 사무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반부정 경쟁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연구 결정하며,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조정 처리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 행정 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부문(이하, 공상행정관리부문이라 칭함)에 의해 부정 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기타 부문에서 조사하기로 규정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국가는 일체 조직과 개인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 기관 및 그 사무요원은 부정 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않된다.

제 2 장 부정 경쟁 행위

제 6 조 경영자는 하기 부정수단에 의해 시장 거래에 종사하여서는 않된다.

- (1) 저명 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 사용하거나 혹은 저명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저명상품과의 혼동을 일으켜, 해당 저명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 (2) 타인의 회사 명칭 및 그 약칭, 상호을 무단 사용하고,타인의 이름, 필명, 예명을 무단 사용하며, 회사 조직의 명칭 및 그 약칭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 (3)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부분, 웹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및 채널, 프로그램, 칼럼의 명칭 및 표지등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 (4)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를 기업 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

제 7 조 경영자는 재물 혹은 기타 수단에 의해 거래 상대방 혹은 거래에 영향을 주는 제 3 자를 회회하여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거래중 명시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할수가 있다. 경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사실데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할인 혜택, 수수료를 받은 경영자도 사실데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경영자의 직원이 회회에 의해 경영자를 위해 거래의 기회 혹은 경쟁 우세를 도모한 경우, 경영자의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경영자가 증거에 의해 직원 개인의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

다.

본 조 제 1항에서 칭하는 거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제3자란, 직권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8 조 경영자는 광고 혹은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가짜 혹은 오해를 일으키는 상업적 홍보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가짜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제 9 조 경영자는 하기와 같은 상업 비밀을 침범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 (1) 절도, 회뢰, 협박 또는 기타 부정수단에 의해 권리자의 상업 비밀을 얻어내는 행위;
- (2) 상기 수단에 의해 얻어낸 상업 비밀을 피로,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 (3) 약속을 위반하거나 혹은 권리자에 대해 상업비밀을 지킬데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장악한 상업 비밀을 피로,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본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란, 대중들에게 공지되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소유하며 권리자에 의해 상응한 보호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와 경영 정보를 가리킨다.

제 10 조 하기 행위는 상업비밀을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1) 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 직원이 본 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행위;
- (2) 제 3 자가 상업비밀이 본 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비법수단에 의해 얻어진것을 분명히 알거나 혹은 마땅히 알것이면서 여전히 그것을 획득, 피로,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국가 공무원,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1 조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시 구매자의 의향을 위반하여 상품을 끼워서 팔거나 기타 불합리적인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제 12 조 경영자에 의한 경품 판매에 있어서 하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 (1) 설치한 상의 종류, 상품이나 상금으로 바꾸는 조건, 상금 금액 혹은 상품 등 경품 판매 정보가 불명하여 상품이나 상금으로 바꾸는데 영향주는 상황;
- (2) 상을 줄것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내정인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경품 판매를 진행하는 상황;
- (3) 추첨식 경품 판매에 있어서, 최고상금의 금액이 2 만원을 초과하는 상황.

제 13 조 경영자는 허위적인 사실을 꾸미거나 퍼뜨려 경쟁 상대방의 성업상의 평판, 상품의 명예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 14 조 경영자는 기술수단에 의해 인터넷 영역에서 하기와 같은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고, 기타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중사해서는 안된다.

- (1) 동의없이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네트워크 제품이나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목표 점프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위;
- (2)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네트워크 제품 혹은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닫거나 혹은 언로드하도록 사용자를 유도,기만,강박하는 행위;
- (3)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네트워크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4)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네트워크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호환불가를 실행하는 행위.

제 15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법 제 2 장 제 6 조 내지 제 14 조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명료한 규정이 없으며, 경쟁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여 확실하게 조사 처리가 필요한 시장 거래 행위에 대하여 ,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문 혹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문이 연구하여 부정 경쟁 행위로 인정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제 16 조 감독 검사 부문은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시 하기 직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 (1) 부정 경쟁 행위 혐의가 있는 경영장소로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권리;
- (2) 조사되는 경영자, 이해 관계자 및 기타 관련 단위, 개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증명 재료 혹은 부정 경쟁 행위 혐의에 관련된 기타 재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3) 부정 경쟁 행위 혐의에 관련된 합의, 장부, 영수증, 서류, 기록, 비지니스 서신과 기타 재료를 조사, 복사하는 권리;
- (4) 조사된 경영자가 부정 경쟁 혐의를 받는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재물의 출처와 수량을 설명하도록 하는 권리;
- (5) 부정 경쟁 행위 혐의에 관련된 재물을 차압,압류하는 권리;
- (6) 부정 경쟁 행위의 혐의를 받는 경영자의 은행 계좌 혹은 저금과 관련된 회계 증명서, 장부 ,거래내역 정산표등을 조사하는 권리.

제 17 조 감독 조사 부문 및 그 사무 요원은 부정 경쟁 행위를 감독 조사시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8 조 감독 조사 부문이 부정 경쟁 행위를 감독 조사시, 조사되는 경영자, 이해 관계자 및 기타 관련 단위, 개인은 관련 자료 혹은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감독 조사 부문이 부정 경쟁 행위를 추출검사하는 경우, 검사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법 집행 임원을 임의로 선발 파견해야 하고, 추출 상황 및 조사 처리 결과를 곧바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9 조 임의의 단위 혹은 개인은 모두 감독 조사 부문에 부정 경쟁 행위를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감독 조사 부문은 사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전화번호, 우편함, 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요원을 파견하여 신고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실명신고자에 대하여, 감독 조사 부문은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 4 장 법률적 책임

제 20 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법에 의해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 경쟁 행위의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6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위법 제품을 몰수한다. 위법 경영 금액이 5 만원 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 경영 금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위법 경영 금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위법 경영 금액이 5 만원 이하인 경우, 동시에 25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한다.

경영자가 본 법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 검사 부문은 경영자에게 1 개월내에 명칭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등기할것을 명령하고,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등기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 조사 부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고, 원 기업 등기 기관에 의해 그 명칭을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으로부터 삭제하고 통일된 사회 신용 코드에 의해 그 명칭을 대체하도록 하며, 이를 경영 이상 명부에 나열시킨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한다.

제 22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을 회로하거나 혹은 회로를 수수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10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한다.

제 23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진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20 만원 이상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백만원 이상 2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한다.

제 24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 3 자가 본 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범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업 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 직원이 본 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 비밀을 침범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국가 공무원이 본 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 비밀을 침범하는 경우, 임면 기관 혹은 감찰 기관에 의해 처분된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가가 본 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 비밀을 침범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부문에 의해 개업 허가증을 회수한다.

제 25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제 26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상업상의 평판, 상품 명예에 손해를 주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영향을 소거하며,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제 27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제 28 조 경영자가 본 법 제 1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경쟁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위법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명령을 내리고 ,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0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제 29 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경쟁에 종사함으로써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해 신용 기록을 기입하고,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범에 따라 공시한다.

제 30 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 손해 배상 책임과 벌금 납부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에 동시에 지불할만큼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제 31 조 감독 조사 부문이 본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것을 방해함으로써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公安 기관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행한다.

제 32 조 당사자가 감독 조사 부문에 의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행정

소송을 제출할 수가 있다.

제 33 조 감독 조사 부문 및 그 사무 요원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가지는 리더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처벌을 행한다.

제 34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구한다.

제 5 장 부칙

제 35 조 본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초의 국가지적재산권 평가 인증 센터 성립

국가지적재산권국 중국특허기술개발회사에 의해 발기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의해 승인비준된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평가와 기업가치 분석에 종사하는 권위적인 인증기구인 국가지적재산권 평가 인증 센터가 2017년 2월 27일자로 베이징에서 성립되었다.

현재, 국가지적재산권 평가 인증 센터는 이미 베이징, 강소, 료녕, 하북, 산둥, 광서, 길림 등 7개 지역에 성급 서브 센터를 두고 있다.



〒100033 中国北京市西城区金融街35号国际企业大厦A座16层
TEL: +86-10-8809-1921 8809-1922
FAX: +86-10-8809-1920
Email: sanyou@sanyouip.com
Website: www.sanyouip.com